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



구 미 시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

의 안	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8. 4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 및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

- 도시계획구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 중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정한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

나.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대상 : 122,341㎡

- 고아읍 : 1개리 229㎡ (오로리 일부지역)
- 산동면 : 2개리 122,112㎡(동곡리, 적림리 일부지역)

3.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도면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, 제116조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1조
-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32조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

(단위 : m²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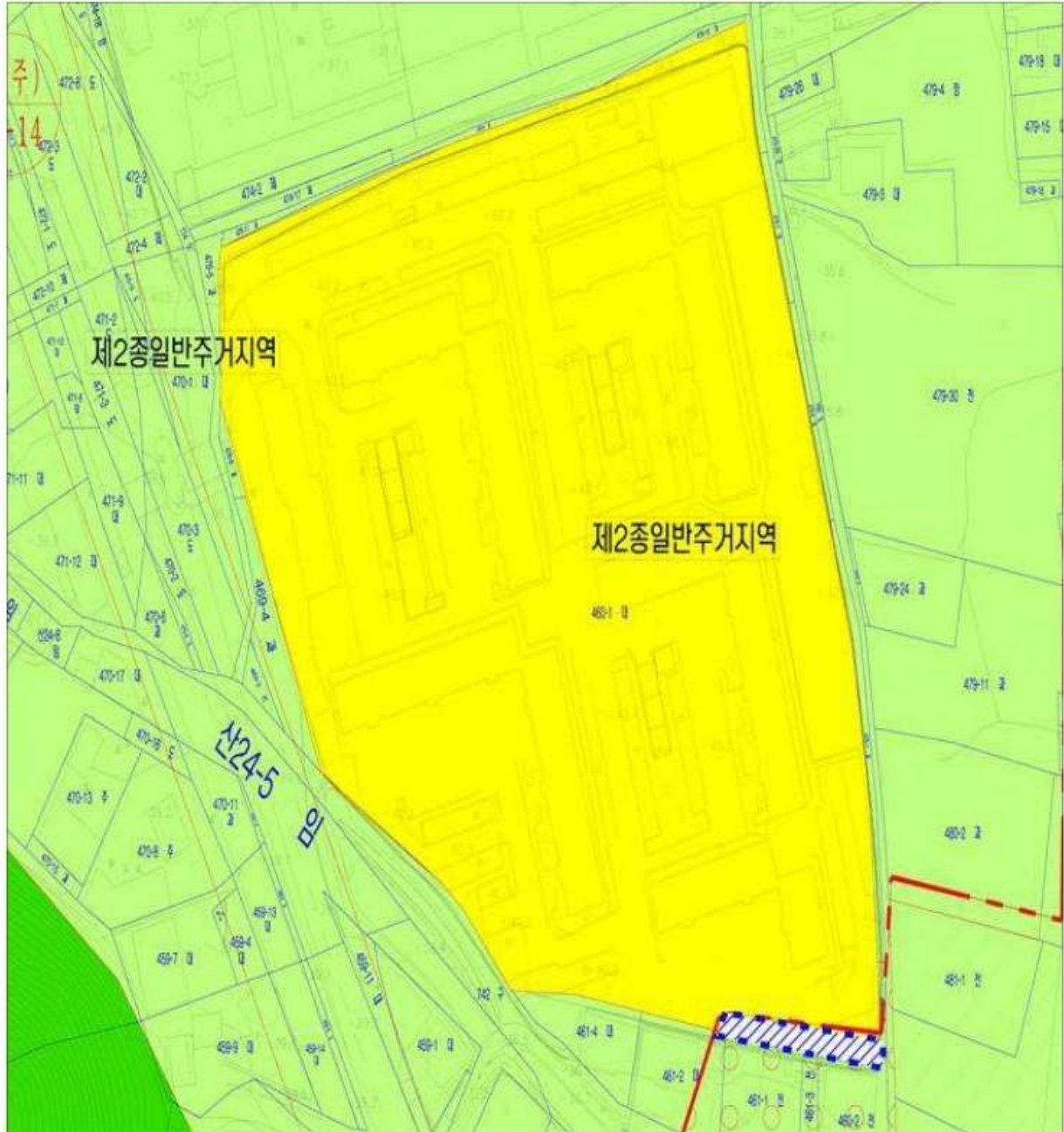
구 분	지 역 명	면 적	비 고
총 계	1읍 1면 3개리	122,341	
고 아 읍	오로리 일부지역	229	도시지역 확장
산 동 면	동곡리, 적림리 일부지역	122,112	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

고아읍 오로리 일원

소재지 :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460-1

축척 = 1:1,800



도시지역분 추가 고시 대상

※ 고아읍 오로리 460-1번지 29,726㎡ 중 229㎡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

고시권자 : 구미시장
고시번호 제 2018 - 호
고시일자 제 2018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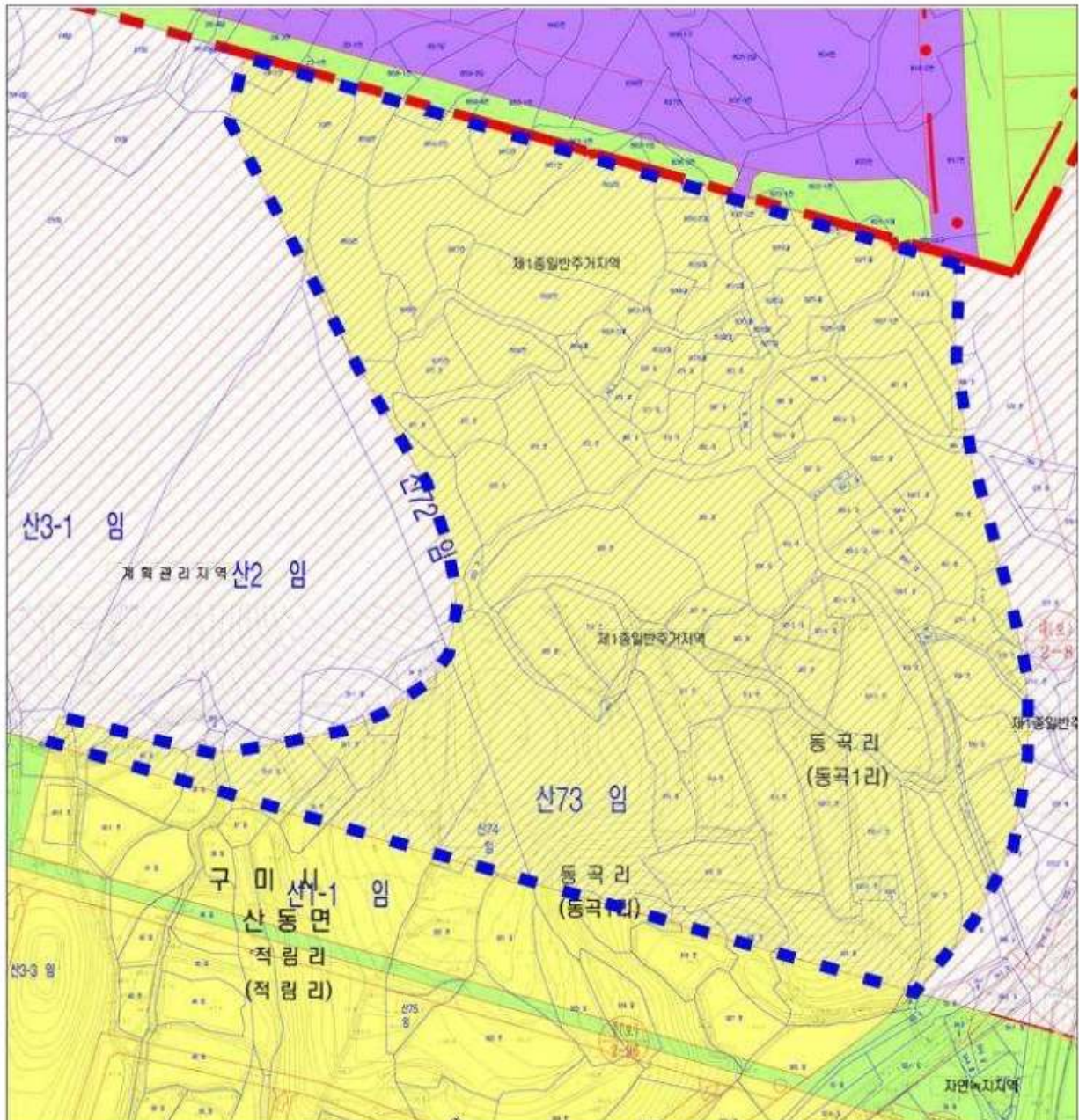
구미시장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

산동면 동곡리 일원

소재지 : 경상북도 구미시 동곡리 및 적림리 일원

축척 = 1:3,500



 도시지역분 추가 고시 대상

※ 산동면 동곡리 및 적림리 일원 : 122,112㎡
- 동곡리 110,177㎡ / 적림리 11,935㎡

고시권자 : 구미시장
고시번호 제 2018 - 호
고시일자 제 2018년 월 일

구미시장

【관계 법령】

□ 지방세법

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"이라 한다)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토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
2.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.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.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, 골프장, 유원지,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16조(징수방법 등)

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

□ 지방세법 시행령

제111조(토지 등의 범위)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토지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(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)
2. 건축물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
3. 주택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(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)만 해당한다.

□ 구미시 시세 조례

제14조(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)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6조(국토의 용도 구분)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,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,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.

1. 도시지역: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·정비·관리·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

제32조(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이하 "도시·군관리계획결정"이라 한다)이 고시되면 지적(地籍)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시장(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)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·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도시·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)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(이하 "지형도면"이라 한다)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·고시된 도시·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나 도지사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소관 실 · 과		세 정 과
입 안 자	과 장	이 영 활
	담 당	김 봉 한
	담 당 자	이 동 진 (480-6863)